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	수정 후
75~75p	해설	수정 전	I 결 론 甲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<u>적극재산 3억원은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B에게 1억원, C에게 2억원 각각 상속되고, 소극재산 2억 1천만원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B와 C에게 각각 1억 1천만원씩 상속된다.</u>	
		수정 후	I 결 론 甲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<u>적극재산 3억원은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B에게 1억원, C에게 2억원 각각 상속되고, 소극재산 2억 1천만원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B와 C에게 각각 1억 500만원씩 상속된다.</u>	
		수정사유	해설 수정	
372~372p	해설	수정 전	소 장 소송목적의 값 ³⁶⁾ : 100,000,000원 인 지 ³⁷⁾ : 455,000원 (계산내역 : 100,000,000원 × 40/10,000 + 55,000원)	
		수정 후	소 장 소송목적의 값 ³⁶⁾ : 40,000,000원 인 지 ³⁷⁾ : 185,000원 (계산내역 : 40,000,000원 × 45/10,000 + 5,000원=185,000원)	
		수정사유	해설 보충 및 수정	
372~372p	해설	수정 전	36) <u>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</u> 을 구하는 경우 목적물건가액을 한도로 한 <u>피담보채권액</u> (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)을 소가로 한다(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 가목, 제2항 나목). 37)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참조 38)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에서 피담보채무는 <u>선이행의무</u> 이므로 장래이행청구를 해야 한다. 장래이행청구의 청구취지 기재례를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.	
		수정 후	36) <u>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</u> 을 구하는 경우 목적물건가액을 한도로 한 <u>피담보채권액</u> (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)을 소가로 한다(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1항, 제10조 제5항). 사례의 경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00,000,000원이지만, 목적물건가액은 40,000,000원(= 800,000원 × 100㎡ × 50/100)이므로 소가는 40,000,000원이다. 37) <u>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</u> (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2호). 38)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에서 피담보채무는 <u>선이행의무</u> 이므로 장래이행청구를 해야 한다. 장래이행청구의 청구취지 기재례를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.	
		수정사유	해설 보충 및 수정	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